

1. 법률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공개 시 사전수요예측제도 근거 마련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6/5/12 개정 · 2026/11/13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공개 시 사전수요예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
 - 현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
 -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
 - IPO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배정을 허용

2) 주요 내용

- 사전수요예측제도(제119조의3 신설)
 -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시장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기존)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의 권유를 제한하고 있어,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희망 가격·수량 등 수요를 파악하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었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정한 보도자료 및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동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여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
 - 주관사는 초기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되므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제119조의4 신설)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배정을 허용
 - (개정) 사전수요예측과 유사하게 증권신고서 제출 전 청약의 권유, 승낙을 제한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의 사전 확보를 통해 해당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의 형성을 돕고, 상장 후 짧은 기간 동안 공모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시켜 건전한 IPO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관리(제119조의5 신설)

-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5/26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추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 전면 폐지를 위함
 - 금융위원회의 추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포상금제도 개선방안(2026.2.25.)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전면 폐지(제384조 제8항)

-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조사·조치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지급상한 폐지에 맞춰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을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까지)하여 지급’하는 명료한 방식으로 개선

-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여 다른 기관에 신고·접수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또는 공유하여 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가담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으나, 신고를 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부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내부정보 보유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
- 포상금은 과징금 등이 확정적으로 '납입'(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 등으로 제재 이후 과징금 등의 국고 납입이 지연되거나,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과징금 부과'결정' 시점에 포상금 지급예정액 일부(10%, 상한 1억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5/26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제33조 제1항)
 - 종전의 포상금 지급상한(10억원)을 폐지
 - 부정행위 신고의 내용,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등의 기준 변경(별표 1 제1호 후단)
 -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 장기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 등을 할 때 위반행위의 계속성을 고려하도록 함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 산정 범위 확대(별표 1 제2호 나목)
 - 회계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 (기존)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만큼, 사실상 분식 회계를 주도·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 (개정)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와 계열회사(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1억원)을 적용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